

1. 개정이유

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이 개정(2021.12.21.공포, 2022.6.22.시행)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조문 정비(안 제33조 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4조 중 “법 제40조제3항제3호”를 “법 제40조제4항제3호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”을 “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.6.22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) ① 수급자는 법 제40 조제1항 및 <u>제3항</u> 에 따른 본인 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본인이 부 담한 비용이 제14조에 따른 비 급여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요 청할 수 있다.	제33조(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) ① -----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 인부담금 감경대상자) <u>법 제40 조제3항제3호</u> 에서 “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” 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 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 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 다.	제34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 인부담금 감경대상자) <u>법 제40 조제4항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5조(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) ① <u>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</u> 에 따 른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 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	제35조(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) ① <u>법 제40조제2항 및 제 4항</u> ----- ----- -----

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 다 만,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 부터 7일(공휴일은 제외한다)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